◈ 政府 施策 ◈

關稅減免대상 全面 재조정

— 財經院, 추진계획마련…단계적 조정방침 —

정부는 △첨단기술산업및 방위산업기자재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공장자동화물품 △환경오염방지및 산업재해예방 물품 등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관세감면대상물품 개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財政經濟院이 마련한 이 추진계획(일정)은 업계가 특정물품에 대해 올해 또는 내년부터 새로 관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지정신청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의 관세감면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용품의 관세감면대상 물품은 과학기술처(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지정되는데 올 4월이후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늦어도 2월초까지 과기처에 통보해야 한다.

재경원은 이어 오는 6월에 환경부·통상산업부, 노동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환경오염방지및 재활용용품,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물품 분야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 11~12월에 첨단기술산업및 방위산업용품,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감면물품을 재 조정하되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용품은 올 2월말까지 수요조사(통상산업부)를 마치고 공장자동화 물품역시 올 4~5월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어서 관세감면물품 지정희망을 원하는 기업은 5월까지 신청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정계획

분 야 별 (감면율)	현행대상 품 목	개편추진일정	
		수요조사(기관)	시행
첨단기술산업및 방위산업(30%)	7개산업 150개업종 340개품목	2월말(통산부)	95.11월
공장자동화용물품(40%)	361개품목	4~5월(통산부)	95.11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80%)	241개품목	2월토(과기처)	95.4월
환경오염방지및 재활용용품(50%)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품목(50%)	88개품목 59개품목	4월말(통산부, 환경부) 4월말(노동부)	95.6월 〃

한전지원 기술개발 대상과제 공고

- 1月18日부터 2月4日까지 신청 접수 -

통상산업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중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 자금으로 1995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전기기기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7호, '95. 1. 20)하고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토록 했다.

1. 지원대상과제 : 『154KV급 이상 전기기기 절연 붓싱 개발』등 6개 과제("NEWS LETTER" '95-2호참조)
2. 접수시간 : 1995년 1월 18일~1995년 2월4일(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소인 유효)
3. 접수처 : 한전기술연구원(대전직할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4. 신청요령 : 한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개발사업 운용 및 관리기준』참고(한전 기술기획처, 한전기술연구원비치)
5. 기타 신청자격, 지원내용, 개발기간, 지원규모, 개발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접수처인 한전기술 연구원 연구기획실 개발협력부(042 · 865-5220, 5221) 또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전화 424-4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工基盤사업 支援體制 改編

- 通産部,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 개정고시 -

정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 지원체제가 경쟁위주의 성과제고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됐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이 감사에 대비한 관리위주로 운영돼 우수한 참여기관도 연구개발보다는 행정절차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

통산부는 이번 고시된 운영요령에서 향후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현행 과제도출방식을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통한 분야도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과제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과제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기관을 지정,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경쟁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과제도출시의 경쟁이 1.5대1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전에는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을 대학·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조합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같은 제한을 폐지, 실질적인 연구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절차에 미숙한 영세사업자의 소규모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응모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유응모과제는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방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실시, 기술개발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연구기관이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정액기술료외에 경상기술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 연구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징수를 위한 활용도 평가절차 생략등 사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되 기술개발사업 협약단계에서 부터 기술료 징수 과제와 미징수 과제로 구분해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징구등 담보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성과제고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전문개정(안)요지

구 분	현 행	개 정
○기본이념	○감사위주 실적관리 시스템	○경쟁위주 성과제고 시스템
○경쟁유도 체계로 전환	○수요조사의 과제도출 방식 -경쟁율 : 1.5:1 ○중복지원 방지로 유사과제 지원 제한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통한 지원분야 도출 방식(개정안 제7조 제2항)-경쟁율(예상) : 5:1이상 ○유사한 과제에 대하여도 동일 주관기관이 아닌경우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경쟁유도(개정안 제18조 제3항)
○기술개발진입제한철폐 -주관기관 자격 확대	○주관기관제한 -대학,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조합등 6개 분류에 한정	○주관기관 제한철폐(개정안 제11조 제2항)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 학회, 협회 등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연구능력이 있으면 참여가능 -실질적인 연구개발능력 엄정 평가
-자유형태 참여보장	○자유응모 과제 미시행	○자유응모과제 시행(개정안 제14조 제4항) -절차에 무지한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에게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지방확산 유도		-수도권이외의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엄정한 평가 체계확립 -경쟁평가 체계도입	○교수중심의 외부전문가 100%평가	○외부전문평가와 관리기관의 공동평가로 상호 경쟁력 평가체계 도입 -관리기관 평가비율(20%수준)
-객관적·중립적 평가 체계 운영	○사업성·기술성 통합평가 ○최종평가시 우수·보통·불량으로 3단계 평가 -보통평가 : 2/3수준	○사업성 및 기술성의 별도 분리 평가 ○기술적인 성공, 실패의 2단계로 평가(개정안 제29조 제6항)
-평가사업의 선진화		○외국인 전문가 초청평가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 -연구비의 탄력적 활용 보장	○연구개발비 사용비목간 제한 -직접 연구비, 간접연구비등 5개항목별 사용용도 지정	○연구개발비 사용비목간 제한 대폭 완화(개정안 제19조) -연구비 항목에 대한 개념 규정만 두고 구체적 세부 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운용 가능토록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장	○정액기술료만 징수	○기술성과의 자율적 활용을 위한 경상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개정안 제32조 제4항)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 자율적으로 협약
○사후관리 간소화 -활용도 평가 절차 생략 -기술료징수 절차 간소화	○활용도 평가에 따른 기술료 징수 절차 개시 ○기술료 납부에 대해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후에 징수여부 결정	○최종평가시 기술적 성공평가에 따라 기술료 징수절차개시(개정안 제32조 제1항) ○협약단계에서 부터 기술료 징수과제와 미징수과제로 구분(개정안 제6조 제2항) -징수과제의 경우 협약단계에서 약속어음등 담보장치 마련

中企 모니터링制 導入

- 現場의견 수렴 中企施策수립 -

통상산업부는 중소업계의 현장감있는 의견을 수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통산부는 WTO 출범으로 국제화·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시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업계의 현장의견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2월중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표성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20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 오는 3월부터 매분기별로 산업동향, 애로사항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벌이고 부도실태나 자동화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견등 특정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모니터 요원의 선발은 중소제조업 종사자, 중소기업 유관기관 종사자, 학계·연구소 근무자 및 기타 중소기업정책에 관심을 가진자로 하고 다양한 업종의 의견수렴을 위해 음식료품·섬유·기계·금속·화공·전기·전자 등의 업종별로 일정요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요원들이 소속해 있는 기업을 통상산업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모니터링업체로 지정, 각종 정책자금 공급시 일정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통산부 및 중진공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우선 제공하고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지금까지는 중소업계의 의견이 관련단체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업계의 현장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이같은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되면 여과없는 현장의견을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貿易관련제도 단계적 개선

- 輸入先多邊化 品目 상반기중 전면 재검토 -

WTO 출범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역관련 제도의 정비계획이 올 상반기중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WTO 후속조치와 관련, 무역관련 제도에서는 현재 수입선다변화제도, 각종 수입허가절차, 원산지규정, 수출자율규제등 회색조치,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통산부는 특정품목의 對日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올 상반기중 품목별 특성과 국산품의 경쟁력 및 해제시의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축소범위와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매년 10%씩 감축, 오는 98년에는 지난 93년의 50% 수준인 129개 품목으로 감축하고 이후 동 제도의 존치여부를 근복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 상반기 중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축소범위와 조정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수입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49개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수입요건 및 절차가 WTO 협정에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규정은 현재 추진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표시제도 등의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WTO 협정에서 발동요건 및 절차가 명료화된 산업피해구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키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한편 선별성이 인정되는 섬유부분의 잠정세이프가드제도 운용과 관련제도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WTO 협정상 일정기간을 거쳐 철폐하게 돼 있는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철폐대상을 파악한 후 오는 4월말까지 구체적인 철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밖에도 WTO 지적재산권 관련협정과 국내제도가 상치되는 특허법보호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상표법에서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지원제도에서도 협정위배 요소를 제거하고 특정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ISO 認證 · 硏修기관 확대키로

- 外國기관 國內잠식 · 國內機關 외국 進出대비 -

정부는 외국기관들의 국내 ISO 9000 인증시장의 잠식에 적극 대응, ISO 9000의 인증 · 연구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WTO시대를 맞아 외국인증기관의 국내진출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공진청은 최근 한국능률협회를 ISO 9000 연구기관으로 승인, ISO 9000 연수업무를 복수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연내에 3~4개의 연수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ISO 9000인증기관도 연내에 10여개를 더 늘려 국내의 폭증하는 ISO 9000인증 · 연수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진청은 올해중에 ISO 9000인증업체가 700~8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에 등록되는 국제심사원 및 진단사를 500명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ISO 9000 인증 · 연수업무는 이미 세계적으로 복수경쟁체제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증 · 연수기관이 진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증기관은 영국의 DNA-QA · LR-QA, 독일의 TUV-RHEIN-LAND · TUV-BAYERN, 미국의 UL 등이 있으며 이들기관의 국내업체에 대한 ISO 9000 인증실적은 252건에 달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품질인증센터등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은 4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진청은 WTO시대를 맞아 외국인증기관의 국내진출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향후 동남아 등지로 우리의 ISO 9000 인증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ISO 9000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능률협회는 그간 공진청에서 규정한 ISO 9000 연수기관 승인요건을 갖추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모든 교육기록을 검증 · 확인가능토록 체계화하는 한편 연수생에 의한 강사와 교육 · 훈련내용 평가체제를 도입하는등 선진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調達廳, 外資대금결제방식 대폭 개선

– 5만달러이하 外資, 現金引受渡로 변경 –

조달청은 5만달러이하의 外資및 수요기관의 긴급필요 外資물자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을 신용장방식에서 現金引受渡(COD)로 바꾸고 수요자에 대한 실물공급방법도 용역업체를 통한 Door-to-Door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외자공급기간을 종전의 150~180일에서 30~40일로 대폭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행정 개혁방안'에 따르면 연간 총외자구매 업무중 76%를 점유하는 5만달러이하의 외자구매 물자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의 검정, 보험회사 부보등 21개 행정절차를 거쳤으나 이를 7단계로 대폭 줄여 주문에서 실제입수까지의 기간을 종전의 150~180일에서 30~40일로 단축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위해 총액규모가 5만달러 이하이거나 수요기관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외자도입의 경우 신용장개설 대신 조달청 지정 대행업체가 Door-to-Door 서비스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지정 대행업체가 Door-to-Door 서비스를 하게되면 지정대행업체는 해당 外資를 외국생산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現金引受渡(COD, Cash On Delivery)의 방식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정 대행업체는 해당물품의 檢定, 保險付保, 海送, 通關業務를 수행한 후 국내로 들여와 수요기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해 수요기관에 인도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정업체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Door-to-Door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신속한 배달을 통해 보세창고료는 6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인수비용은 31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은행비용은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계약금액도 인하돼 물류비용이 종전에 비해 87%나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외국운송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해 국내 운송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원자재 비축사업도 장기보관이 용이하고 물류비용이 낮은 품목은 종전과 같이 직접 비축하고 중요성은 높으나 보관성이 낮고 물류비용이 높은 품목은 민간업체들의 책임하에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비축물자 방출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입찰 가격으로 우선배려키로 했다.

이밖에 외상방출 위주로 해오던 비축물자 방출방식을 현금방출 원칙으로 전환해 비축자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